

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-1543호

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이행을 명령하였으나,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명칭: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직권말소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대상

건설기계 등록번호	소유자	주소	비고
인 천 06바 2027	(주)용****피	인천광역시 서구 ***	

3. 공고기간: 2026. 6. 17. ~ 2026. 7. 10.(15일 이상)

4. 공고방법: 서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

5. 공시송달 내용

가.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이행을 명령하였으나,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(등록의 말소 등)제8항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을 예고 통보하오니, 소유자께서는 직권말소 예정일 이전까지 검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나. 이해관계인(압류, 저당권자)께서는 직권말소 등록 예정일 전까지 권리행사 및 다른 물건의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기한 내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
※권리행사라 함은 기간 내 압류(저당)권자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 절차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 또한 건설기계가 말소되더라도 이미 등록된 압류 및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으며 건설기계를 재등록(부활)할 경우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.

다. 문의처 :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(☎032-560-4884)

2026. 6. 17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

